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

구 분	자 격	제출서류
1. 장애인 가정	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'중증'장애인 또는 그 자녀	 장애인 증명서('중증'표기) 또는 장애인등록증(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기재된 서류) 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
2. 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	■「아동복지법」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	 아동양육시설 출신확인서(붙임1), 재원증명서, 입소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
3.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	【학생가장 본인】 • (자격)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 • (자격확인) 가족관계증명서 • (제한) 기혼자 지원 제외 【조손가정 자녀】 • 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/모가 사회적 배려계층*에 해당되어야 함 *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	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조손가정의 경우), 사실관계확인서(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) ※ 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
4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	■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* 본인 또는 그 자녀 * 학생 및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	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수급자 증명서), 차상위계층 확인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
5. 한부모가족	■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* * 만 22세 미만(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)	■한부모가족 증명서
6. 기타 사회적배려계층	 위 자격 외 기타 사회적배려개층지는 추후 학생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	•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

※ 제출 서류는 5년 간 대학별 자체 보존 및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

[※]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선발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

붙임 1

가정외보호 시설 출신자 제출 서류(예시)

아동복지시설 출신확인서

1. 보육원장 인적사항				
성 명	주민등록번호 (앞 7자리만 기재)	주 소	연락처	
	540319 - 1(예시)			

2.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(앞 7자리만 기재) 주 소 연락처 940607 - 2(예시)

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보육원 출신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확인자 주 소:

성 명: (인) 또는 (기관 직인)

사업자등록번호 :

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

유의사항 확인자와 보육원장이 다른 경우, 기관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

* 목적에 맞게 양식(내용)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